

2024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내

1 사업개요

- ▶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으로 용자금 지원

사업추진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및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(규칙)

2 지원대상

- ▶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50인미만 중점지원)

↳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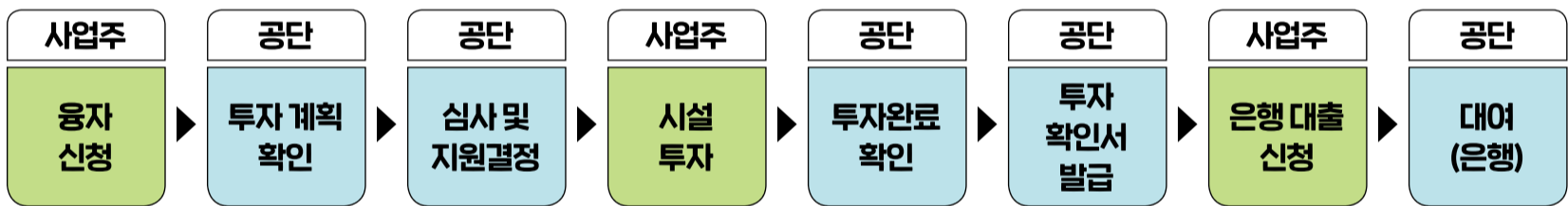
- * 용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
- *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
-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www.sims.go.kr>)에서 지원합계 확인
- *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·결정 사업장은 용자금 지원 결정 불가
- 단, 안전동행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,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용자금 지원 결정 가능
- * 24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금 재신청·결정 불가



3 지원조건 및 절차

- ▶ 지원조건 | 사업장당 10억원 한도, 소요비용 전액지원(부가세 별도, 고정금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
- ▶ 지원절차

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▶ 기간: 24년 1월~재원소진 시까지(4,568억원)
- ▶ 방법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(우편·직접 방문) 접수

5 지원품목

- ▶ 위험기계기구(부속품 포함)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
- ▶ 기술사업(진단·점검·컨설팅)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
↳ 고용노동부 및 공단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,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,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·보수

6 추가 안내사항

- ▶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용자금 신청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

온라인 신청 매뉴얼 |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→ 알림마당 → 서식모임 및 자료실

신청서류 다운로드 |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→ 알림마당 → 서식모임 및 자료실 (문의: ☎ 1544-3088)

2024년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

1 우선선정 점수 배점

선정항목	점수	비고
①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거나 취약한 업종 - 건설업(대업종기준) ⇒ 20점 *건설관련 소업종(40001~40010), 건설업본사 소업종(90515) 포함 - 건설업, 제조업을 제외한 전 업종(대업종기준) ⇒ 15점	최대 20점	• 업종 기준 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시(제2022-82호) 산재업종에 따름
②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- 두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⇒ 20점	20점	• '24년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
③ 시설 및 장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-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점검 및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⇒ 10점	10점	• 감독·점검 및 기술지원결과 보고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
④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이 신청한 경우 ⇒ 10점	10점	•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용자금 신청 시 점수 부여
⑤ 소액 용자 신청사업장 - 3천만원 미만 신청(용자신청금액 기준) ⇒ 20점	20점	• 용자 신청금액 기준
⑥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-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경우 ⇒ 5점 *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상생협력 지원사업장 제외	5점	• 접수일 기준 최근 확정통계 상시근로자수 적용
⑦ 고용증가 사업장 - 신청 전 1년 근로자수 비교	5점	• 접수일 기준 전년 대비 확정통계 상시 근로자수 기준
⑧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- 해당 근로자 1명당 ⇒ 1점(최대 5명, 5점까지 인정)	최대 5점	•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• 근로계약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제출하는 경우 인정
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-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⇒ 5점 * ①노사문화 우수(대상)기업, ②NCS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③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기업, ④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, ⑤청년친화강소기업	5점	•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하고, 중복해당 시 합산하지 않음
계	100점	

- 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 순번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- 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금 지원결정 불가(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사업장 제외)
- ※ '24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·결정 불가
- ※ '24년 사업연도 중 정부정책 등 반영 과정에서 우선선정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(변동시 재안내)